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1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조정식・민병덕・정을호

백승아 · 정성호 · 부승찬

황운하 · 서미화 · 김성화

문진석 • 이기헌 • 염태영

김재원 • 이병진 • 유종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결과로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충분치 않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

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 대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 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를 "임무·배치계획,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훈련계획 등이"로 한다.

제9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 제36조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 치 · 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 (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 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 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 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 ---임무·배치계획, 장애인 관 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 매년 이를 관할 시장 · 군수 · 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훈련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획 등이----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과태료) ① (생 략) 제9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 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 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 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
 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
 완하지 아니한 자

4의2. ~ 9. (생략)

<u>③</u> (생 략)

<u>③</u>					 -
					 -
1.	~ 3	. (현행	과 깉	음)	
<스	}	<u> ></u>			

4의2. ~ 9. (현행과 같음)④ (현행 제3항과 같음)